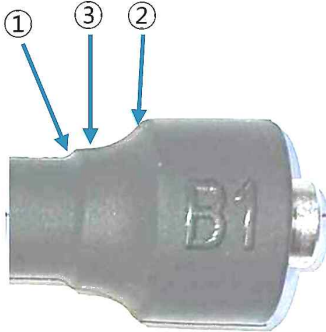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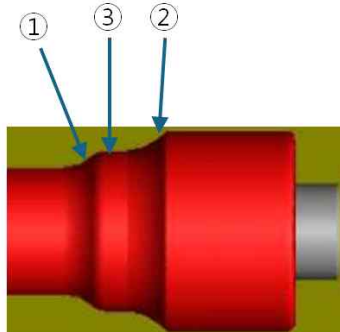


【 문제-1 】 (30점)

甲은 휴대전화 보호필름 부착장치인 입체롤러를 개발하여, 2023. 12. 4. 해당 입체롤러에 대한 디자인 X를 창작하였다. 甲은 2024. 3. 15. 乙에게 디자인 X의 도면을 제공하면서 디자인 X가 적용된 입체롤러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乙은 2024. 4. 5. 디자인 X가 적용된 입체롤러를 제작하여 甲에게 납품하였다. 그 이후 乙은 디자인 X에서 그 형태의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 Y를 구상하여, 별도의 甲의 허락 없이 2024. 5. 7. 특허청(現지식재산처)에 디자인 Y를 출원하였고, 해당 디자인 Y는 2024. 10. 2. 특허청(現지식재산처)에서 디자인등록이 완료되었다. 한편, 甲은 2024. 3. 4. 디자인 X를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임).

디자인 X와 디자인 Y가 아래의 표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 디자인 X와 디자인 Y의 특징 >

구분	디자인 X의 도면	디자인 Y의 도면
정면도		
우측 확대도		
좌측면도		
디자인 X와 디자인 Y의 공통점 및 차이점		
공통점	디자인 X와 디자인 Y는 전체적으로 아령 형태의 형상으로, 롤러의 가운데 부분의 두께는 얇게 형성되고, 양 끝에서 2번에 걸쳐 두께가 두껍게 변하는 2단의 단차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공통됨.	

차이점	(1) 첫 번째 단차(우측 확대도 ① 부분) 및 두 번째 단차(우측 확대도 ② 부분)와 관련해서 디자인 Y는 디자인 X보다 그 경사가 다소 완만하게 형성되어 있음. (2) 첫 번째 단차와 두 번째 단차 사이의 폭(우측 확대도의 ③ 부분)의 길이와 관련해서 디자인 Y는 디자인 X보다 그 길이가 다소 길게 형성되어 있음. (3) 금속 막대를 감싸는 외피의 두께(, )와 관련해서 디자인 X보다 디자인 Y의 외피가 약간 두껍게 형성되어 있음. 다만 이러한 외피의 두께는 금속 막대를 감싸는 재질의 두께에 따라 조금씩 변할 수 있는 요소임. (4) 위 (1) ~ (3)의 차이점은 사람이 양 디자인을 육안으로 살펴본다고 하였을 때, 전체 디자인에서 해당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겨우 알 수 있는 요소임.
------------	--

- (1) 甲은 디자인 Y가 등록된 사실을 발견하고, 디자인 Y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제1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효사유(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가 있음을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때 甲이 주장할 수 있는 적절한 청구이유를 판례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단,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제1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효사유에 대해서만 설명할 것) (14점)
- (2) 甲은 디자인 Y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제1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2024. 12. 5.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해당 무효심판에서 乙은 디자인 Y가 甲이 2024. 3. 4.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디자인 X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디자인 Y는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해당 디자인 Y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제1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효사유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乙의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판례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8점)

- (3) 위 설문 (2)의 무효심판에서 甲의 청구가 인용되어 2025. 6. 5. 디자인 Y의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 甲은 2025. 6. 16. 디자인보호법 제45조에 따라 디자인 Y의 정당한 권리자로서 디자인 Y를 특허청(現지식재산처)에 출원하였다. 또한 甲은 디자인 Y에만 유사한 디자인 Z를 구상한 후 2025. 6. 20. 디자인 Z에 대해 디자인 Y를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다. 그 이후 지식재산처에서는 2026. 1. 2. 甲의 디자인 Y의 출원에 대해 甲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디자인 X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신규성 위반의 거절이유를 통지했고, 같은 날 甲의 디자인 Z의 출원에 대해서도 甲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디자인 X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신규성 위반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이 경우 甲이 디자인 Y와 디자인 Z에 대해서 통지된 신규성 위반의 거절이유에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을지 설명하시오. (단, 본 설문에서 甲은 디자인 Y의 정당한 권리자가 맞는 것으로 가정하며, 甲이 디자인 Y의 정당한 권리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하지 않음) (8점)

【 문제-2 】 (20점)

甲은 2024. 1. 2. 특허청(現지식재산처)에 디자인 X를 출원하면서 이와 동시에 설정등록일로부터 2년 동안 디자인 X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였고, 디자인 X는 비밀디자인 청구가 받아들여진 상태로 2024. 12. 3. 특허청(現지식재산처)에서 최종 등록되었다. 또한 甲은 2024. 3. 4. 특허청(現지식재산처)에 디자인 Y를 출원하였고, 디자인 Y는 2025. 1. 3. 특허청(現지식재산처)에서 최종 등록되었다. 이때 甲은 디자인 Y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밀디자인 청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단,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 (1) 甲은 乙이 디자인 X와 디자인 Y를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25. 3. 4. 디자인 X와 디자인 Y 각각의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乙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한다. 이때 디자인권 침해에 있어서의 과실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甲과 乙 중 누구에게 있는지 설명하시오. (단, 디자인 X에 대한 입증책임과 디자인 Y에 대한 입증책임을 각각 분리하여 설명할 것) (7점)
- (2) 乙은 2024. 4. 5. 특허청(現지식재산처)에 디자인 Z를 출원하였고, 디자인 Z는 2025. 2. 5. 특허청(現지식재산처)에서 최종 등록되었다. 이때 甲은 디자인 Y와 디자인 Z가 아래의 표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비록 디자인 Z가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디자인이기는 하지만, 디자인 Z는 선출원되어 등록된 자신의 등록디자인 Y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乙에 대해 디자인 Z는 등록디자인 Y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때 甲이 주장할 수 있는 적절한 청구이유를 판례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13점)

< 디자인 Y와 디자인 Z의 특징 >

1. 디자인 Y는 탁상용 전기 스탠드 몸체에 관한 것이고 디자인 Z는 탁상용 전기 스탠드에 관한 것으로서, 디자인 Y는 부분품, 디자인 Z는 그 부분품을 포함하는 완성품이라고 볼 수 있음. 이로 인해 디자인 Y와 디자인 Z는 그 대상 물품이 서로 다름.
2. 디자인 Z의 실시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디자인 Y의 대상인 부분품, 즉 스탠드 몸체에 관한 디자인의 실시가 전제됨.
3. 디자인 Y와 디자인 Z에서 스탠드 몸체에 해당되는 부분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몸체의 전방, 후방, 그리고 몸체 상단에 형성된 상부 케이스의 형상과 모양이 서로 완전히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음.

4. 디자인 Z는 스탠드 몸체 하단에 전방은 반원형이면서 후방은 양쪽으로 각이 진 얇은 판체로 된 형태의 받침대가 추가되어 있는 반면, 디자인 Y는 이러한 받침대 없이 스탠드 몸체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음.
5. 전기 스탠드 몸체에 관한 디자인에서는 몸체 정면 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요부라고 할 수 있고, 몸체 하단에 붙여지는 얇은 판 형태의 받침대는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아니하여 그 받침대의 유무로 인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요소에 불과함. 아울러 스탠드의 몸체 하단에 받침대를 추가하는 정도의 변형은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흔히 취할 수 있는 기능적이고 상업적인 변형에 불과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음.

【 문제-3 】 (30점)

甲의 등록디자인 A의 물품과 乙의 실시디자인 B의 물품의 명칭은 ‘방한용 실내화’이다. 등록디자인 A와 실시디자인 B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① 발등 부위는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의 형태로서 그 위의 작은 원형의 통공이 균일한 간격으로 여러 개 형성되어 있는 점, ② 발등 부위와 발의 양쪽 측면이 만나는 부분에는 재봉선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신발 양쪽 측면에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모양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④ 뒤꿈치 부위에 신발 갑피와 밑창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지지대가 비스듬하게 형성되어 있고, 지지대 좌우로 대칭되게 곡선의 재봉선 모양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이 있다. 반면, 등록디자인 A와는 달리, 실시디자인 B의 경우 발등 부위 통공에 끼우는 액세서리가 달려있는 점에 차이점이 있다.

甲은 乙에게 실시디자인 B는 등록디자인 A와 유사하므로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취지의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이에 乙은 대응방안을 고심하던 중 등록디자인 A의 출원 전에 공개된 선행디자인 C, D, E를 발견하였다. 선행디자인 C와 D의 대상 물품의 명칭은 ‘실내화’이고, 선행디자인 E의 대상 물품의 명칭은 ‘겨울 방한 실내화’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단,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甲의 등록디자인 A	乙의 실시디자인 B
	

선행디자인 C	선행디자인 D	선행디자인 E
		

- (1) 공지 부분을 포함하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을 등록 판단 단계와 침해 판단 단계별로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설명하고, 그 판단기준에 따라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甲의 등록디자인 A와 乙의 실시디자인 B의 유사여부를 판단하시오. (10점)
- (2) 乙은 실시디자인 B에 대해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해 낼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실시디자인 B는 등록디자인 A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乙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2점)
- (3) 등록디자인 A에 기초한 甲의 침해금지의 청구에 대해, 乙이 등록디자인 A의 출원 전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가 있음을 이유로 권리남용의 항변이 있는 경우, 그 항변의 당부와 그 당부에 대해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8점)

【 문제-4 】 (20점)

甲은 ‘드론용 카메라’에 관한 신규한 디자인 A를 창작하여 2025. 9. 11. 부터 파리에서 2주간 개최된 드론 전시회에 출품·전시하여 공개하고, 2025. 10. 2. 이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한 후 2026. 3. 3. 제1국에서 디자인등록출원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 (1) 甲은 2026. 7. 31. 변리사 乙에게 제1국출원 디자인 A와 동일한 디자인을 국내에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디자인 A가 국외에서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디자인 A를 등록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제1국출원이 해당 국가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변리사 乙이 자문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2) 丙은 ‘미니 드론’ 디자인 B를 창작하고 2025. 8. 1. 한국에 디자인등록출원 및 판매를 완료하였다. ‘미니 드론’ 디자인 B에는 甲의 디자인 A와 유사한 형상과 모양을 한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다. 甲이 디자인 A가 적용된 드론용 카메라를 드론제작회사인 丁에게 납품하고 있다. 丙의 ‘미니 드론’ 디자인 B가 적법하게 등록된다는 전제에서, 甲의 행위가 丙의 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10점)